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나20538 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나205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가단52470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수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강성유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9.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가단52470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지상목, 판사 박평균

별지